



제 1291호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 고 제2016-	544호	2016년04월 취득세 공시송달	2
○ 공 고 제2016-	567호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4
○ 공 고 제2016-	571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 예고	8
○ 남동구보건소 공 고 제2016-	2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13

고 시

○ 고 시 제2016-	3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고시	14
○ 고 시 제2016-	37호	도시관리계획(만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
○ 고 시 제2016-	38호	도로명주소 고시	18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544호

취,등록면허세 고지서 공시송달

성 명	이**덕 외 6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2016년 01월 독촉 및 16년 03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16년 01월 독촉 및 16년 03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서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반송함장기방치” 및 “폐업” 등으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기 2016.03.31을 2016.04.30. 로 변경하여 공시하오니 납기 내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6. 04. 0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취득세 2016.03월 수시분 및 2016.01월 독촉분 공시송달내역

(단위: 원)

연번	세목	개인(법인)명	납세자번호	납세번호	공고사유	세액합계
1	취득세	이**덕	420526-*****	101501-2016-01-2-650-001471	수취인미거주	2,747,860
2	취득세	윤**자	560112-*****	101501-2016-01-2-522-001650	수취인미거주	1,101,750
3	취득세	원**준	100712-*****	101501-2016-01-2-530-001894	수취인미거주	1,236,100
4	취득세	윤**현	820120-*****	101501-2016-03-2-582-013369	수취인미거주	650,790
5	취득세	윤**민	840229-*****	101501-2016-03-2-582-013370	수취인미거주	650,780
6	취득세	유**숙	541229-*****	101501-2016-03-2-560-013438	수취인미거주	267,760
7	취득세	유**녀	621128-*****	101501-2016-03-2-560-013441	수취인미거주	267,75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 - 56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6년 4월 12일 ~ 5월 2일
- 장 소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 남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incheon.go.kr/land_info/)에서 조회 가능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6년 4월 12일 ~ 5월 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 제출방법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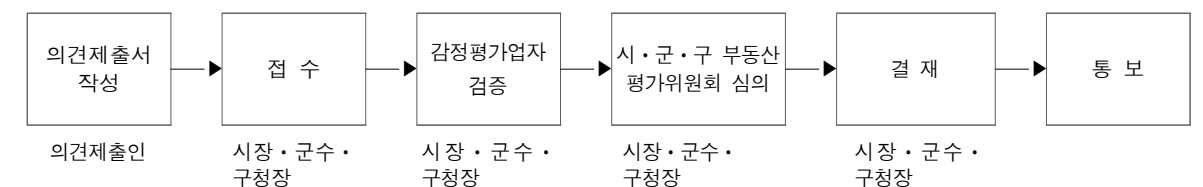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6.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571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나. 시 행 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다. 설치장소 : 3개소

행정동명	위 치
논현동	① 아이플렉스 앞(논고개로 123번길)
논현동	② 라피에스타 사거리(논고개로 61)
간석동	③ 남동대로 916번길 입구

※설치예정장소 위치도면 : 별첨

라. 예고기간 : 2016. 4. 7 ~ 2016. 4. 27(공고일로부터 21일)

마.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바.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로 문의
(☎032-453-2880)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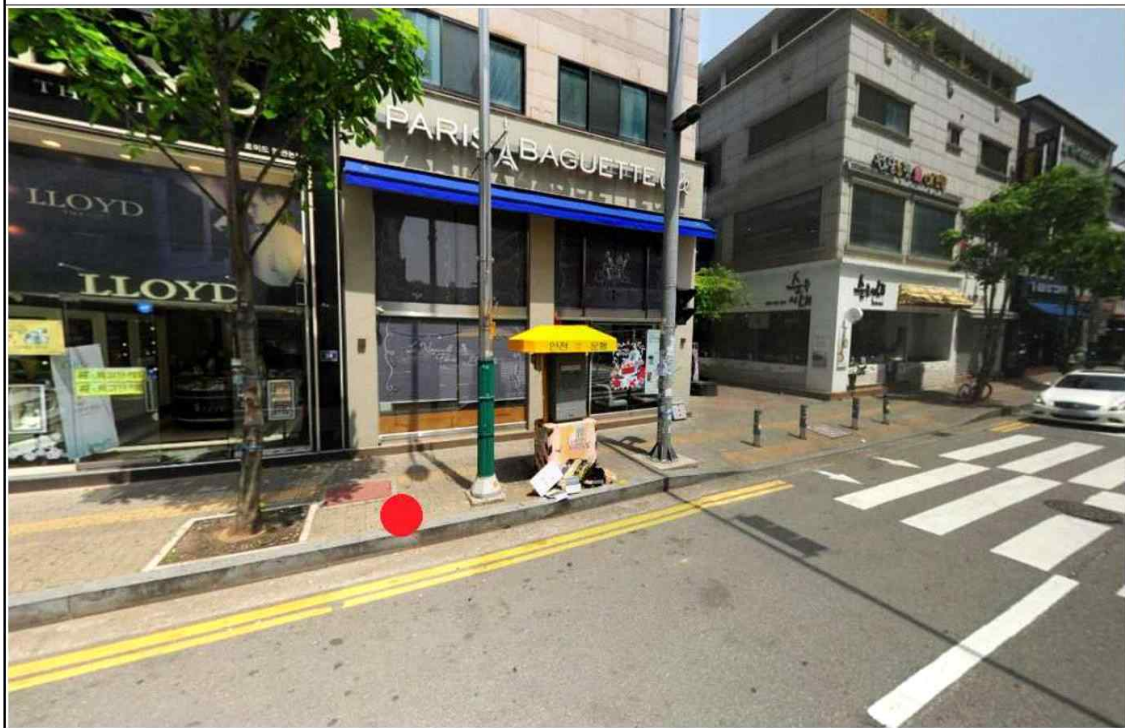
위치도면 및 현장사진

① 논현동 아이플렉스 앞(논고개로 123번길)

■ 위치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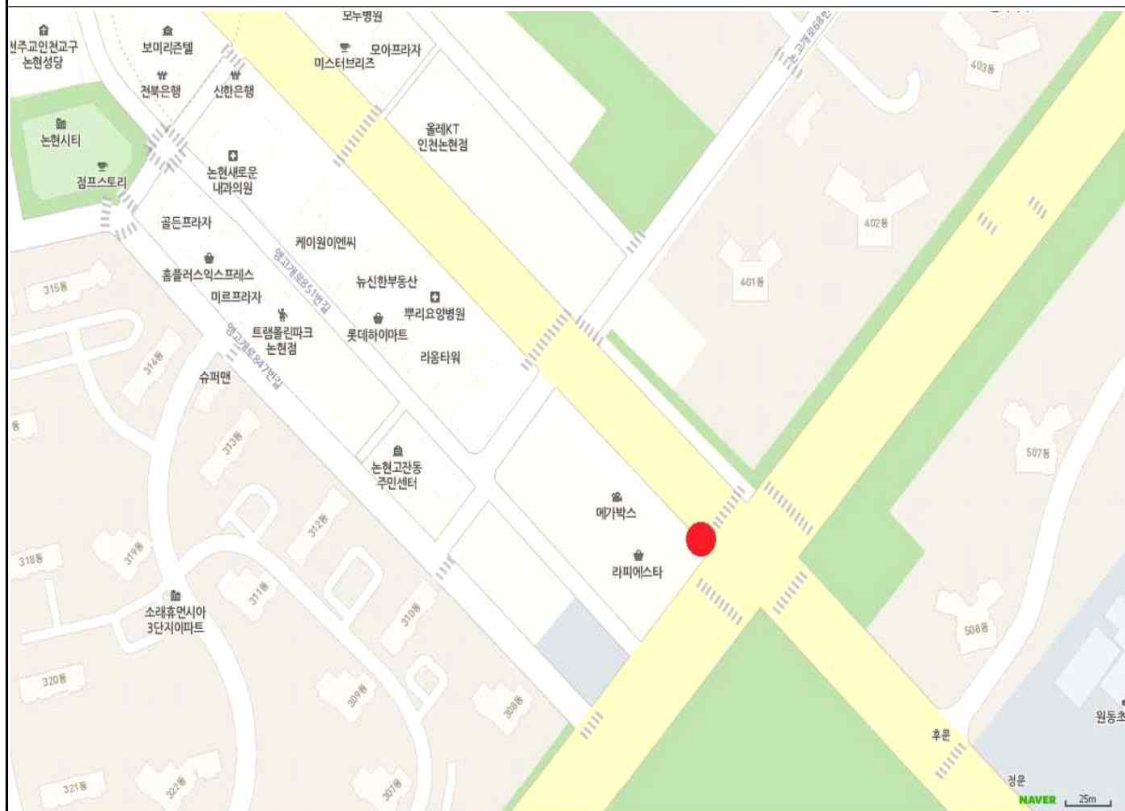


■ 현장사진



② 논현동 라피에스타 사거리(논고개로 61)

■ 위치도면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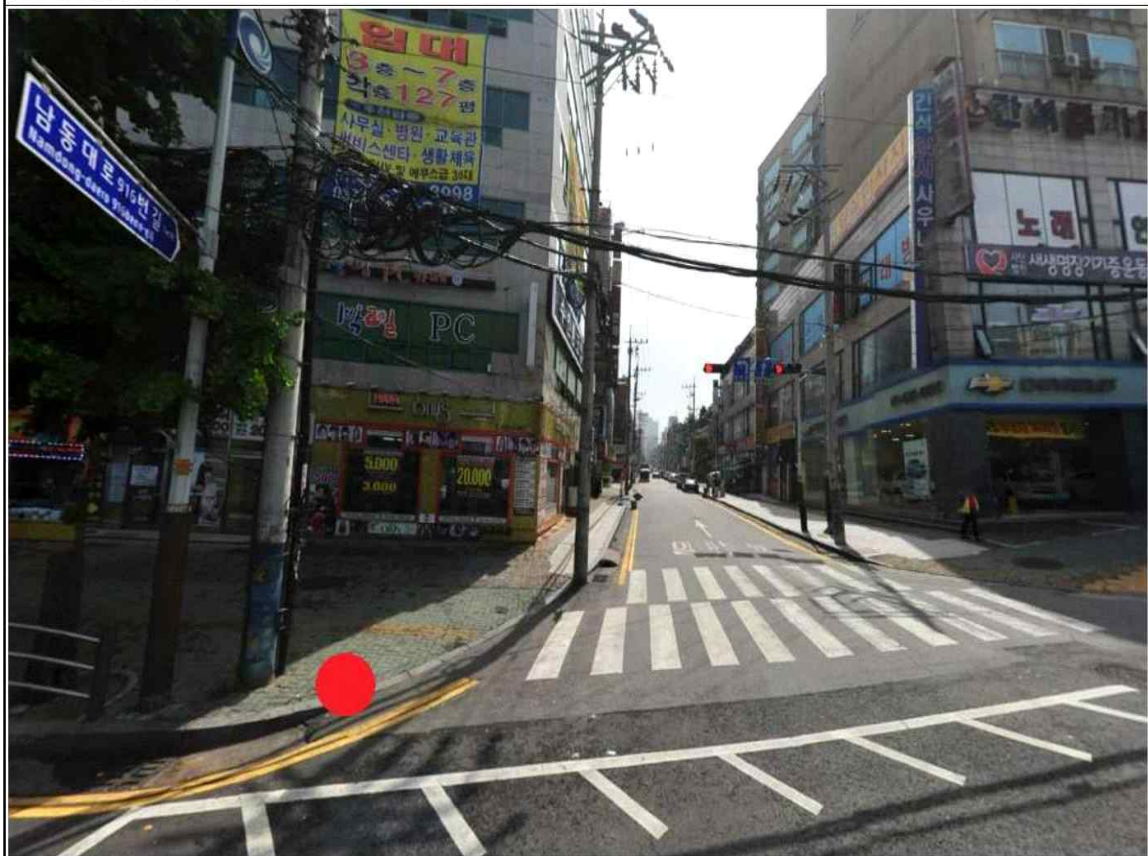


③ 간석동 남동대로 916번길 입구

■ 위치도면



■ 현장사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당사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연락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6-2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6. 04. 2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공 고 기 간 : 2016. 04. 06. ~ 2016. 04. 2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즉석판매 제조가공 업	2012- 0200090	하모니 축산	조*형	인천 남동구 용천로168번길 17, 1층(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12.31.	2016.4.20

6. 고 지 사 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032)453-2755

2016. 04. 0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16-3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승인 하였기에 동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그 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0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허가번호 및 허가일**

가. 허가번호 : 제 2016 - 01 호

나. 허 가 일 : 2016년 04월 5일

2. 점용·사용의 목적

-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대교 부근 공유수면**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사용료**가. 면 적 : 2,017m²

나. 기 간 : 실시계획의 신고수리일로 부터 30년

다. 사용료 : 면 제

5. 점용·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6. 기타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6-37호

도시관리계획(만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 혁신전략추진단(☎032-453-609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4. 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만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남동구 만수동 37번지 일원(만수지구)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있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대1-14호선변	13,302.1	감 332.6	12,969.5	1984.12.31.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규모변경 : 면적(감 332.6m ²)	공원 결정으로 단절된 녹지를 일부 축소 후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2)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8	아단공원	어린이 공원	만수동 37번지	4,764.6	감 731.2	4,033.4	1984.12.31.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8	아단공원	규모변경 : 면적(감 731.2m ²)	공원 일부 축소후 체육시설 결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체육시설	배드 민턴장	만수동 35번지		1,063.8	1,063.8		

○ 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체육시설	체육시설 결정 : 1,063.8m ²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육시설 결정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4. 지형(결정)도면 : “별 첨” (게재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6-3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 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494 외 7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남동구	남촌동	237	인천광역시남동구	호구포로	494	2009.7.10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호구포로494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494를건물번호로부여	
2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공공주택지구	주4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공원로	30	2014.7.25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공원을 인용하여 제명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30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0을건물번호로부여	변경전 : 구월보금 자리주택 지구
3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공공주택지구	상업6-3	인천광역시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12	2014.7.25	선수촌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24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선수촌공원로23번길12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12를건물번호로부여	변경전 : 구월보금 자리주택 지구
4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1093-7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3	2009.7.10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주대로914번길33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3을건물번호로부여	1동
5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1093-7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7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주대로914번길37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7을건물번호로부여	2동
6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1093-7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5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주대로914번길35번 기초구간에위치하여35을건물	3동

										번호로부여	
7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1093-7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29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주대로914번길29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29을건물번호로부여	4동
8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1093-7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25	2009.11.16	인주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6.4.7	건물등의주된출입구가인주대로914번길25번기초구간에위치하여25를건물번호로부여	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남동구	만수동	1093-7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3	2016.4.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